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구고등법원 2017. 2. 3. 2016노386]

【전문】

【피고인】

【항 소 인】검사

【검 사】이도희(기소), 심재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정대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6. 23. 선고 2016고합60 판결

【주문】

-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3.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 4. 피고인으로부터 97,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여 의식을 잃도록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범행에 관하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각 강간치상죄 또는 각 강제추행치상죄의 상 상적 경합으로 의율하였다.
- 그러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한 행위는 일련의 강간치상죄 또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일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보호법익 역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그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신체의 완전성을 내용으로 하는 강간 치상죄 또는 강제추행치상죄와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양 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인다.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 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여 의식을 잃도록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범행에 관하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각 강간치상죄 또는 각 강제추행치상죄의 상 상적 경합으로 의율하였다.
- 그러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한 행위는 일련의 강간치상죄 또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일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보호법의 역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그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신체의 완전성을 내용으로 하는 강간 치상죄 또는 강제추행치상죄와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양 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인다.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 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유]

1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여 의식을 잃도록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범행에 관하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각 강간치상죄 또는 각 강제추행치상죄의 상 상적 경합으로 의율하였다.
- 그러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템을 사용한 행위는 일련의 강간치상죄 또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일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보호법익 역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그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신체의 완전성을 내용으로 하는 강간 치상죄 또는 강제추행치상죄와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양 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인다.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 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여 의식을 잃도록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범행에 관하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각 강간치상죄 또는 각 강제추행치상죄의 상 상적 경합으로 의율하였다.
- 그러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템을 사용한 행위는 일련의 강간치상죄 또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일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보호법익 역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그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신체의 완전성을 내용으로 하는 강간 치상죄 또는 강제추행치상죄와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양 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인다.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 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유]

1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여 의식을 잃도록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범행에 관하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각 강간치상죄 또는 각 강제추행치상죄의 상 상적 경합으로 의율하였다.
- 그러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템을 사용한 행위는 일련의 강간치상죄 또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일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보호법의 역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그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신체의 완전성을 내용으로 하는 강간 치상죄 또는 강제추행치상죄와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양 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인다.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 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여 의식을 잃도록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범행에 관하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각 강간치상죄 또는 각 강제추행치상죄의 상 상적 경합으로 의율하였다.
- 그러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한 행위는 일련의 강간치상죄 또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일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보호법의 역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그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신체의 완전성을 내용으로 하는 강간 치상죄 또는 강제추행치상죄와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양 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인다.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 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유]

1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여 의식을 잃도록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범행에 관하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각 강간치상죄 또는 각 강제추행치상죄의 상 상적 경합으로 의율하였다.
- 그러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템을 사용한 행위는 일련의 강간치상죄 또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일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보호법익 역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그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신체의 완전성을 내용으로 하는 강간 치상죄 또는 강제추행치상죄와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양 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인다.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 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여 의식을 잃도록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범행에 관하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각 강간치상죄 또는 각 강제추행치상죄의 상 상적 경합으로 의율하였다.
- 그러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한 행위는 일련의 강간치상죄 또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일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보호법익 역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그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신체의 완전성을 내용으로 하는 강간 치상죄 또는 강제추행치상죄와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양 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인다.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 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